

영등포구의회  
제129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檢 討 報 告 書

2007. 7. 6



行 政 委 員 會  
( 專 門 委 員 )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## 1 제안자 및 제출경과
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- 발의일 : 2007년 6월 25일

## 2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된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민간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순화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## 3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개정 (안제 9조제3항, 제4항제2호 및 제3호)
- 나. 기금결산 시 재무보고서 작성 추가 (안 제7조제2항)
- 다. 조문을 한글 용어순화 정비

**4****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합 의 : 필요 없음.

다. 기 타

- 입법예고 : 2007.5.22~2007.6.11(20일 간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규제 신설, 폐지 등 없음

**5****검토의견**

-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,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3월 9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, 자구정리를 하고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기금결산시 재무보고서를 추가하려는 조례안입니다.  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7. 6

보고자 : 김 완 섭

## 〈관련법령〉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18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**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4조 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있어서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**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**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